



보도	2025.2.11.(화) 석간	배포		2025.2.1	0.(월)
담당부서	공시심사국	책임자	팀 장	임형준	(02-3145-8470)
	공시조사팀	담당자	조사역	신우택	(02-3145-8473)

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

[주요 내용]

- □ 금융감독원은 2024년 중 상장·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**공시의무** 위반에 대하여 총 130건*(68사)을 조치하였음(전년 대비 14건 증가)
 - * 정기공시 71건, 발행공시 35건, 주요사항공시 22건, 기타공시 2건
 - 상장법인 18사, 비상장법인 50개사에 대하여 66건(50.8%)을 과징금 등 **중조치**하고, 64건(49.2%)을 경고 등 **경조치**
- □ 2025년에도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,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
 - 또한,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

1.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

조치 유형별 분석

- ◇ 상습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로 중조치 비중 증가(12.1%→50.8%)
- □ (중조치) 위반 동기가 고의・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(21건) · 과태료(1건)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(44건) 조치
 - **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** 법인(8개사, 42건 위반)에 대한 **가중조치***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대비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
 - *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조치 ('21.5.12.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)

□ (경조치)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고·주의 조치(64건)

조치 유형별 현황

(단위 : 건, %)

	 구 분	202	20년	202	21년	202	22년	2023년		2024년	
	丁 正	건수	비중	건수	비중	건수	비중	건수	비중	건수	비중
중	과 징 금	30	(15.5)	18	(20.7)	18	(20.5)	11	(9.5)	21	(16.2)
호 조	증권발행제한 [*]	16	(8.3)	-	-	4	(4.5)	1	(0.9)	44	(33.8)
치	과 태 료	6	(3.1)	3	(3.4)	-	-	2	(1.7)	1	(8.0)
^	소 계	52	(26.9)	21	(24.1)	22	(25.0)	14	(12.1)	66	(50.8)
경	조치(경고·주의)	141	(73.1)	66	(75.9)	66	(75.0)	102	(87.9)	64	(49.2)
	합 계	193	(100)	87	(100)	88	(100)	116	(100)	130	(100)

^{*} 상장폐지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

2 공시 유형별 분석

- ◇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(71건, 54.6%)을 차지하고 있고, 발행공시 위반(35건)과 주요사항공시 위반(22건)이 각각 26.9%, 16.9% 수준
- □ (정기공시) 사업(분·반기)보고서 미제출·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으로 총 71건(54.6%)을 조치
- □ (발행공시) 증권신고서,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으로 총 35건 (26.9%)을 조치
- □ (주요사항공시) 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 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으로 총 22건(16.9%)을 조치
- □ (기타공시)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으로 총 2건(1.6%)을 조치

<u>공시 유형별 조치 현황</u>

(단위: 건, %)

7 8	202	20년	202	1년	20	22년	2023년		2024년	
구 분	건수	비중	건수	비중	건수	비중	건수	비중	건수	비중
정기공시	90	(46.6)	35	(40.2)	35	(39.8)	27	(23.3)	71	(54.6)
발행공시	40	(20.8)	18	(20.7)	28	(31.8)	14	(12.1)	35	(26.9)
주요사항공시	11	(5.7)	25	(28.7)	18	(20.4)	4	(3.4)	22	(16.9)
기타공시	52	(26.9)	9	(10.4)	7	(8.0)	71	(61.2)	2	(1.6)
합 계	193	(100)	87	(100)	88	(100)	116	(100)	130	(100)

3 회사 유형별 분석

- ◇ 조치대상회사는 총 68社이었으며, 비상장법인의 비중(50社, 73.5%)이 높았고, 상장법인(18社, 26.5%)은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(15社, 22.1%)
- □ (상장법인)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은 15사,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은 3사를 조치
 - **주요사항보고서**의 **중요사항**(CB·BW 발행시 담보 제공, 주요자산 양수도시 외부기관 평가의견)에 대한 **기재누락**이 주로 **발생**
- □ (비상장법인) 비상장법인 50사가 공시위반으로 조치를 받은바,
 -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, 관련 법령 미숙지,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 위반

회사 유형별 조치 현황

(단위: 사, 건,%)

	 구 분	202	0년	202	1년	202	22년	년 2023년		2024년	
	T 正	회사	건수	회사	건수	회사	건수	회사	건수	회사	건수
	유가증권	6	6	3	3	-	_	1	1	3	4
	코스닥	51	57	15	15	15	15	3	4	15	15
상장	코넥스	2	2	4	4	2	2	_	_	_	-
	소 계 (비중)	59 (40.4)	65 (33.7)	22 (30.1)	22 (25.3)	17 (26.2)	17 (19.3)	4 (3.8)	5 (4.3)	18 (26.5)	19 (14.6)
	비상장 (비중)	87 (59.6)	128 (66.3)	51 (69.9)	65 (74.7)	48 (73.8)	71 (80.7)	101 (96.2)	111 (95.7)	50 (73.5)	111 (85.4)
	합 계	146	193	73	87	65	88	105	116	68	130

Ⅱ.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

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

▶ (사례) 주주에 의해 보통주가 매출되었음에도 비상장법인 A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증권신고서 미제출

□ (발행인) 증권이 매출되는 경우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, 증권 모집·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50인 미만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할 수 있음
 투자자(주주)가 발행인에게 매출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관련 법규정을 안내하고 매출시 회사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할 필요
□ (매출인) 증권신고서의 발행 없이 주식 등을 매출하는 경우 매출인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매출 전에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문의할 필요
 그 밖에도 회사의 평판 저하, IPO 일정 지연 등으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
□ (투자자)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
있으므로 투자시점에 증권신고서를 확인할 필요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► (사례) 주권상장법인인 B는 자산총액의 10%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(토지)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, 동
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► (사례) 주권상장법인인 B는 자산총액의 10%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(토지)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, 동보고서에 관련 자산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 □ (회사) 주권상장법인은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·도하는 경우
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► (사례) 주권상장법인인 B는 자산총액의 10%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(토지)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, 동보고서에 관련 자산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 □ (회사) 주권상장법인은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·도하는 경우그 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함에도 ○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외부기관 평가의견서를 누락하여 조치

3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- ▶ (사례)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법인 D는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되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였으나, 해당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업보고서를 미제출
- □ (회사) 비상장법인도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별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
 -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
 않음에 주의
 - ※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이 예상되는 경우 연장신고서 제출제도 활용 가능
 -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법인은 정기적으로 주주명부 등을 확인 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
- □ (투자자) 비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·미제출하는 경우, 행정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, 이는 회사의 평판저하, IPO 일정 지연 등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
 -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**지연제출·미제출**하는 경우에는 **향후** 관리종목 지정,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

Ⅲ. 향후 계획

◈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,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·주의사항을 지속 적으로 안내할 예정

□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

- 공시서류 미제출,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,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하고,
- **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**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**과징금** 등 **중조치**를 취할 예정

□ 궁시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

-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**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**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**적극 안내**
- 공시설명회(상장회사 대상) 개최,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·홍보*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
 - * (예)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, 비상장법인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등

[☞]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